



의사출신 변호사 이용환 辯護士

[Http://www.legalexpert.co.kr](http://www.legalexpert.co.kr)

Tel. 02) 3355-7000 | Fax. 02) 6280-700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3동 1699-16번지 동현빌딩 7층

의료사고와 해당 판례고찰 (환자관리 측면)

1. 정신병원에서의 환자관리

개방병동에서의 자살사건에 대해서는 의사에게 관대한 판결이 내려진 것이 많으나 자살시도의 기왕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감시 강화가 필요하고 시설관리도 철저히 해야 한다. 개방병동의 사용과 감시의 소홀문제는 대개 환자의 자살을 둘러 싸고 문제점으로 등장하게 된다. 개방병동의 사용 및 감시의 빈도는 정신과의사에 의한 전문적인 판단에 위임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정신과 의사는 이러한 조치에 납득이 갈만한 배경과 설명에 궁색해서는 안될 것이다. 정신병원에 입원중인 환자가 자살한 경우 일단은 병원측의 태만과 환자에 대한 무성의 때문에 빚어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가장 중요한 원인은 정신과 병원의 입원은 환자가 반대 하여도 강제입원이 가능하다는 특수성과 의사는 환자의 질병만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전인격을 치료한다는 일반 질병과는 다른점을 지녔기 때문이다. 정신병환자에 있어서는 입원 전 자살기도의 기왕력이 특히 중요하다. 판례들을 보아도 환자가

입원전에 자살을 시도한 일이 있는 이른바 자살미수인 경우, 특히 자살방지를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의 자살은 그 이유와 상황이 어찌되었든 간에 병원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이 일반적이고 반대로 자살을 시도한 기왕력이 없고 병의 정도도 가볍거나 호전되어 개방병동에 입원시켰던 환자가 자살한 예에 대하여는 매우 관대한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입원에 있어서 기왕력을 자세히 물어 자살미수 환자의 경우는 각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병이 호전되었다 하여도 이에 상응하는 치료와 조치를 취하는데 많은 고려가 따라야 한다. 또한 병실에 노끈방치, 둔기, 등 자살방지시설상 하자는 책임을 면하기 어려움으로 시설물의 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려야 한다. 환자 상호간의 상해로 인한 사고가 많으며 지병의 악화방치로 인한 사고시 검사 불충분으로 과실로 인정된다.

2. 관련 판례

■ 판례 1

개방병동으로 옮긴 것에 의사의 과실이 없는한 의사는 상태가 호전되어 개방병동에 수용된 정신병환자의 발작으로 투신할 것에까지 대비하여 항시 감시할 의무는 없다.(서울민사지법 1970.11.25.선고 69가14361판결)

■ 판례 2

입원환자가 위험한 방법으로 병원을 나가려고 기도하거나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을 예견할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비하지 않음은 의사 및 간호원으로서 감시보호를 태만히 한 것이다.(서울민사지법 1976.11.24선고 75가합4715판결)

■ 판례 3

폐쇄병동에 입원한 전환장애 환자의 자살사건은 의사의 자살방지 주의의무위반이다.(대법원1991.5.10선고 91다5396판결)

■ 판례 4

정신병원에 입원중 탈출하여 강간(強姦)을 범행한 기왕력이 있는 환자가 재차 탈출, 범행한 것은 병원의 책임이다.(Thall v. State, 239 N.Y.S. 2d 837 New York, 1972).

■ 판례 5

환자가 링겔주사약병을 손에 들고 변소에 가다가 넘어져 두개골 골절 및 뇌경막하출혈로 사망한 사건에서 의료인은 환자가 밖으로 나오다 넘어질 것까지 예상하여 관찰 감호할 의무는 없다.(서울고등법원1978.8.31선고 78나916)

■ 판례 6

산부인과의사의 부재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수 없었던 것은 신생아의 뇌성마비를 일으킨 중대한 원인이다. 분만과정중 의사가 관여하지 못하여 의사로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 하였다면 신생

아의 저산소성허혈성뇌증 발생의 중대한 원인이 되었다 할것이다.(서울고법 1997.8.21선고 95나27136판결)

■ 판례 7

병원을 방문한 어린이가 병원 창문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책임을 놓고 부모의 부주의와 병원의 관리소홀의 경합이 있을시의 법률적 판단은에서 환자의 병문안차 병실을 방문하였던 어린이가 창문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것은 병원의 관리소홀 때문이다(일본 나가야 지방재판소, 1972. 8. 24. 판결)

■ 판례 8

노인환자가 7.5인치 되는 계단에서 실족 부상한 것은 병원측의 관리 소홀에 책임있다. (Urdang v. Marrer, 158 N) 2d 202, ohio, 1959)

"의료인은 환자의 진료 이외에도 전인격적인 주의로써 환자의 보호관리에 세심한 배려를 기울여야 한다"